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현대카드㈜

2. 조치일 : 2025. 6. 4.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 관	개선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고객확인 업무 체계 미흡

회사는 내규「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에 따라 고객확인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미흡한 사항이 있다.

㈎ 고위험 고객 등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하면서 해당 고객에 대해 금융거래등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나,

고객이 추가정보를 '기타'로 선택하는 경우 '기타'에 대한 상세내용을 필수로 입력하지 않더라도 고객확인업무가 완료될 수 있고, 금융거래등의 목적에 타당성 없는 정보가 입력된 사례가 발견되는 등 강화된 고객확인 정보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강화된 고객확인시 추가정보를 '기타'로 선택하는 경우 상세내용을 필수로 입력하여야만 고객확인업무가 완료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금융거래등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정보에 대한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강화된 고객확인 정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세탁등의 위험도에 따른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를 설정·운용하면서 재이행 주기 도래 1개월 전 고객에게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알림으로 고객확인 재이행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으나,

비대면으로 고객확인을 수행한 경우에는 위험도에 따른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재이행 주기를 설정하는 등 내규와 다르게 운영하고 있고,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경과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재이행 안내 및 재이행여부 모니터링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고객확인 재이행이 장기간 지체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자금세탁등의 위험도에 따른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에 맞춰 지속적인 고객확인을 수행하는 등 내규에 부합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경과 고객이 조속히 고객확인을 재이행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고객확인 재이행률 등 재이행 현황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고객확인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고객에 대하여 매월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를 설정하고 고위험으로 평가된 고객의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하도록 업무체계를 마련하였으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재구축 이후 매월 실시하는 고객위험평가 결과값이 채널계(고객정보관리)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고위험으로 평가된 고객이 중·저위험으로 관리되는 등 고객위험평가 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서 매월 실시하는 고객위험평가 결과값이 채널계(고객정보관리) 시스템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고객위험평가 업무 운영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고객이 귀화 등의 사유로 국적이 변경되어 고객정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국적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변경내용을 채널계(고객정보관리) 시스템에 반영하고 있으나,

채널계(고객정보관리) 시스템에서 변경된 국적 정보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서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도래 전까지 최신의 고객정보를

반영하지 못해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가 적정하게 평가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기존고객의 고객확인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최신의 고객정보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도 적시에 반영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고객확인 정보 변경 등 업무처리의 정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체계 운영 미흡

회사는 내규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에 따라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 및 운영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다.

㈎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에 대해 연 1회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존 추출기준의 개선·폐지 및 신규 추출기준 개발시 추출기준의 유효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추출기준 변경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정기적인 추출기준 적정성 점검을 생략하거나, 점검을 실시하더라도 추출기준 제·개정시 추출기준에 대한 유효성 검토 등이 미흡하여 일부 추출기준은 정의된 요건대로 설계되지 않고, 모니터링 대상 금융거래등의 범위가 충분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변경사유·승인일자 등 추출기준 변경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운영 중인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에 대해 설계 오류 여부, 모니터링 범위의 적정성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적정성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한편, 추출기준 제·개정시 추출기준의 유효성 등에 대한 검토를 충실히 수행하고 변경 이력을 전산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사기관 영장 등 외부기관 정보요청 건에 대해 소관부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공유받아 의심스러운 거래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소관부서로부터 자료를 공유받은 외부기관 정보요청 건 중 의심스러운 거래 여부 검토가 불명확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외부기관 정보요청 건에 대한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체계에 미흡한 점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수사기관 영장 등 외부기관 정보요청 건에 대한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추출된 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내부 보고체계(자금세탁방지 보고담당자 보고 및 보고책임자 결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보고담당자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한 후 보고책임자가 결재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금융정보분석원 앞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의 적시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보고체계를 개선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